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

현재 사용 중인 ‘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’ 용어를 보다

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

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 라는 용어로 변경하여

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4조제2항에서 ‘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’ 를
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 로 변경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